

의안번호	2213460
의 퇴 인	박정현 의원
회 답 일	2025.10.24.
추 계 번호	25E546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,693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7,030억원(연평균 1,75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,251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,779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7조의3제1항)	-1,693	-2,321	-2,408	-607	-7,030	-1,757
- 국세(74.7%)	-1,265	-1,734	-1,799	-454	-5,251	-1,313
- 지방소비세(25.3%)	-428	-587	-609	-154	-1,779	-44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7조의3(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) 제1항	○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7조의3(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) 제1항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조세지출 실적에 향후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전망(NABO, 2025.9.)을 반영해 세수효과를 추정

- 동 제도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2022년 25억원에서 2024년 778억원, 2025년(전망) 2,177억원으로 증가
- 참고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1,750만명에서 2021년 97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1,637만명으로 증가¹⁾
 -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1~2024년 기간 연평균 156.8% 증가하였으나,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
 - 코로나19 발생 이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~2019년 5년간 연평균 4.3%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음
- 변동성이 높은 최근의 추세만으로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대상 관광객 수 및 의료용역 지출, 부가가치세 환급액 수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, 동 추계에서는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전망(2026년 3.5%, 2027년 3.8%, 2028년 3.7%)을²⁾ 반영함

□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1)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, “입국관광통계”

2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」, 2025.9.30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778억원, 2025년 2,177억원(전망) 등으로 집계

[표 2]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지출액: 2021~2025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
조세지출액	6	25	296	778	2,177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□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,693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7,030억원(연평균 1,75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을 기준으로, 추계기간에 대한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전망을 반영해 추정
- 환급대상인 의료용역 공급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, 환급 기간을 감안해 당해연도 용역 공급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년도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산하여 반영함
 -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환급이 이루어짐

[표 3]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9년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7조의3제1항)	-1,693	-2,321	-2,408	-607	-7,030	-1,757
- 국세(74.7%)	-1,265	-1,734	-1,799	-454	-5,251	-1,313
- 지방소비세(25.3%)	-428	-587	-609	-154	-1,779	-44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